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3402호

시행일자 2024. 1. 1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-22(2024. 1. 4.)

나.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-228(2024. 1. 9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, 다음과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

연도	연평균 보험료 분위						
	저소득			고소득			
	1분위	2~3분위	4~5분위	6~7분위	8분위	9분위	10분위
2024년	87만 원	108만 원	167만 원	313만 원	428만 원	514만 원	808만 원
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	138만 원	174만 원	235만 원	388만 원	557만 원	669만 원	1,050만 원

나. 적용기간 : 2024. 1. 1. ~ 12. 31.(진료일 기준)

다. 공단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예정('24. 1. 10.)

라.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: 808만원

-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

-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급여 청구 불가

#붙임자료 : 관련 공문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 수신처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개원의협의회, 대한병원장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